참고

예상 명부 반영 가구 구성 사례

○ [사례①] 부부가 이혼하고,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자녀의 건강보험은 전배우자인 남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
○ 3인 가구 ☞ 모+자녀1+자녀2 - 아내(이혼), 직장가입자	○ 1인 가구 - 남편(이혼), 직장가입자
- 자녀1,2는 부(父)의 피부양자	↳ A주소지 자녀2명이 피부양자로 등재 중
B 주소지 3인가구	

○ [**사례②**] 부모가 이혼, 자녀는 A주소지의 조모가 양육, 손자의 건강 보험은 C주소지 부(父)의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	C주소지
2 12 31 11 11 11 31	○ 1인 가구- 모(손자의 母, 이혼)- 지역가입자	○ 1인 가구 - 부(손자의 父, 이혼) - 직장가입자
■ A 주소지 조모 1인가구 B 주소지 손자의 모 1인가구 C 주소지 손자의 부는 손자포함 2인가구		

○ [사례③] 부부가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으며, 한쪽 배우자는 주소지가 동일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
○ 1인 가구 - 아내 직장가입자	○ 3인 가구(남편, 아들, 며느리) - 남편, 아들의 피부양자 - 아들, 직장가입자 - 며느리, 남편(아들)의 피부양자
■ A 주소지 아내 1인가구 B 주소지 남편, 아들, 며느리 3인가구	

○ [사례④] 부부가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으며, 한쪽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	C주소지
○ 1인 가구- 아내 직장가입자	○ 1인 가구 - 남편, C주소 자녀의 피부양자	○ 1인 가구- 자녀, 직장가입자
■ A 주소지 아내 1인가구 B 주소지 남편 1인가구 C 주소지 자녀 1인가구		

○ [사례⑤] 부부가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으나,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및 자녀는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
○ 3인 가구 ☞ 부 + 모 + 딸(아내)- 부(父)는 지역가입자- 모(母)는 딸의 피부양자- 딸은 직장가입자	○ 3인 가구 ☞ 사위(남편), 자녀1, 자녀2- 사위(남편)는 아내의 피부양자- 자녀1,2 모두 아내의 피부양자
₩➡ A주소지 6인가구	

○ [**사례**⑥] 가구원 전체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

A주소지
○ 3인가구 ☞ 부 + 모 + 자녀
- 부(父) 국가유공자
- 부, 모, 자녀 모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
■ A 주소지 3인가구

○ 【사례⑦】 모(母)가 다른 주소지의 형제자매 가구의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
○ 2인 가구 ☞ 남동생(본인) + 모(母) - 본인 지역가입자 - 모(母)는 B주소지 매형의 피부양자	○ 5인 가구 : 작은누나 + 매형 + 조카3명 - 매형 직장가입자 - 모(母), 작은누나, 조카3명 모두 매형의 피부양자
■ A 주소지 2인가구 B 주소지 5인가구	

○ [사례⑧] 의료급여수급 가구원 중 1인이 다른 주소지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를 같이하는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
○ 3인 가구 ☞ 남편, 자녀1, 자녀2- 남편, 자녀1, 자녀2 의료급여 수급자	○ 2인 가구 ☞ 아내, 여동생 - 아내 의료급여 수급자 - 여동생 직장가입자
■● B주소지의 아내가 A주소지의 가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다 하더라도, - A 주소지 3인가구 - B 주소지 2인가구	

○ 【사례⑨】 모(母)와 부(父)가 각각 주소를 달리하면서 자녀의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	C주소지
○ 4인 가구(남편, 아내, 자녀2명)- 남편 직장가입자	○ 1인 가구 - 모친, A주소지 남편 피부양자	○ 1인 가구 - 부친, A주소지 남편 피부양자
■ A 주소지 4인가구 B 주소지 1인가구		
C 주소지 1인가구		

○ [사례⑩] 동일 주소지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고 타주소지 부의 피부양자인 경우

A주소지	B주소지
○ 1인 가구- 부(父)는 직장가입자	○ 3인 가구 ☞ 아들, 며느리, 손자1 - 며느리 직장가입자 - 아들은 A주소지 부(父)의 피부양자 - 손자1은 며느리의 피부양자
■ A 주소지 부(父)와 아들 2인가구 B 주소지, 아들을 제외한 며느리와 손자 2인가구	